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·외 세일즈 활동 및 수출촉진사업을 바탕으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4조)

- 국내·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

○ 예산조치 : 2018년도 당초예산 계상(5천만원)

○ 성별영향평가 : 원안가결 [주민복지과-63462(2017.11.24)]

○ 규제심사 : 원안가결 [기획감사실-10477(2017.11.21)]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 12. 6 ~ 12. 26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 “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”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관내 우수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